

● **환경부령 제912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송신방식(기상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송신되는지 여부)”을 “송수신방식(기상관측자료별 실시간 송수신 여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상측기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기상측기와 함께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상측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구조(내부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및 규격을 말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변경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영문 변경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기상청장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형식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기상측기의 명칭 및 제작자명
2. 수입자명(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번호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연월일

⑨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형식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형식승인서·변경승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기상측기에 부착해야 하는 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6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영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시설·장비

3. 기술인력

④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9서식의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3. 대행업무의 범위

4.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변경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⑦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출입·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상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검정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 검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일을,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을 각각 가산한다)까지 검정 신청을 해야 한다.
-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다.
- ⑤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을”을 “등 사무실의 임차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 5. 사업계획서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업자등록증
- 3. 부동산등기부등본

제11조제3항 중 “영 제7조”를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로, “적합한 지의”를 “적합한지”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 3. 대행업무의 범위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에 드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70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5제곱미터”를 “3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물 옥상에 온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복사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9조관련)”을 “(제7조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상측기를 6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폐쇄할 예정인 경우, 관련 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정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중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의2]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기준(제6조의3제3항 관련)

1. 외관 및 구조

기상측기의 외형, 규격, 재질 등 기상측기의 외관 및 구조가 기상관측에 적합할 것

2. 정확도

측정점 또는 측정 구간에서 기상측기와 기준기(基準器)가 각각 측정한 값의 차이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최대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3. 내구성

다양한 환경에서 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온도·습도 등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방법(제6조의3제10항 관련)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60mm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표시		▲
형식승인번호		↓ 40mm ↓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번호		
모델명		
형식승인일	년 월 일	
변경승인번호		
변경승인일	년 월 일	▼
←————— 30mm —————→		←————— 30mm —————→

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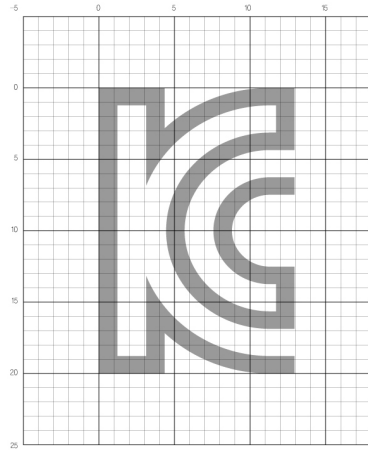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1-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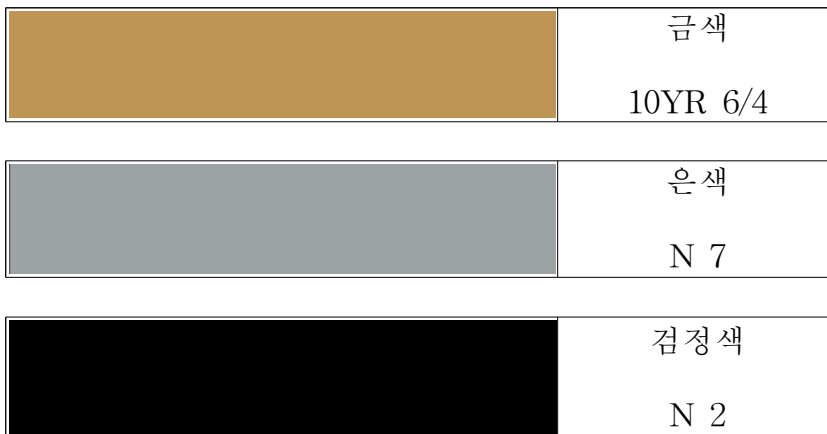
1-2)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색채

2-1)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2-2)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3. 표시 방법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기상측기에 각각 해야 한다.

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는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기상측기의 표면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의4]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제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제작 또는 수입 중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제작 또는 수입 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나.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제작 또는 수입 중지 4개월	형식승인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경고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개월	형식승인 취소
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형식승인 취소		

[별표 3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6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법 제12조의5제	경고	지정	

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된 경우	1항제4호		취소	
마.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 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 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별표 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제7조제5항 관련)

측기의 종류		구분	검정 유형	검정기준
온도계	유리제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公差)의 범위 · 5점(최저점, 중간점, 0℃, 중간점, 최고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실내 검정	
	유리제가 아닌 것	금속제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3점(-10℃, 0℃, 2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박막형	현장 검정
기압계	액주형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7점(800hPa, 850hPa, 900hPa, 950hPa, 980hPa, 1,010hPa, 1,040hPa)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실내 검정	
	액주형이 아닌 것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현장 기압 3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습도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3점(RH 30%, 60%, 90%)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현장 습도 3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풍향계	기계식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8방위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초음파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16방위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현장 풍향 3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풍속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10점(기동, 3m/s, 5m/s, 10m/s, 20m/s, 30m/s, 40m/s, 50m/s, 60m/s, 70m/s)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 공차의 범위 · 현장 풍속 3회 검정 2. 구조검사 · 구조상태, 재질 등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	1. 검정범위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전자식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직달일사(直達日射) 120W/m²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일사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현장 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간일사량 30회 평균값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강수량 계	히터 부착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히터의 점점(4℃±2℃)과 분점(15℃± 2℃) 상태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원통형이 아닌 것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차의 범위 2점(20mm/h, 50mm/h)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차의 범위 · 1점(20mm/h) 1회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태, 재질 등
증발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차의 범위
	현장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태, 재질 등
적설계	실내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차의 범위 · 5점(5cm, 20cm, 60cm, 100cm, 150cm)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태, 재질 등
	현장 검정	1. 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차의 범위 · 60cm 에서 150cm 사이의 3점 각 1회 검정 2. 구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상태, 재질 등
위의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있는 기상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비교

1.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 기본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이 아닌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로 기상측기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차”란 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4. 기상청장은 현장검정을 위하여 현장접근 및 검정요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제13조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 검정필증

◀----- 60mm -----▶		
검 정 필 증		▲
검 정 번 호	제 호	40mm ▼
기 상 측 기 명 칭		
제 조 번 호(일련번호)	호	
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년 월 일	
검 정 기 관 명		
◀----- 30mm -----▶	◀----- 30mm -----▶	

2.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 검정면제필증

◀----- 60mm -----▶		
검 정 면 제 필 증		▲
검 정 · 교 정 번 호	제 호	40mm ▼
기 상 측 기 명 칭		
제 조 번 호(일련번호)	호	
검 정 연 월 일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년 월 일	
검 정 · 교 정 기 관 명		
◀----- 30mm -----▶	◀----- 30mm -----▶	

비고

1. 검정필증·검정면제필증의 재질은 빗물 등에 젖지 않는 재질로 한다.
2. 소형 기상측기의 검정필증·검정면제필증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 지시·기록부 :	측정범위 · 최소 : · 최대 :	
	모델(규격)		
형식승인서 신청	<input type="checkbox"/>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 <input type="checkbox"/>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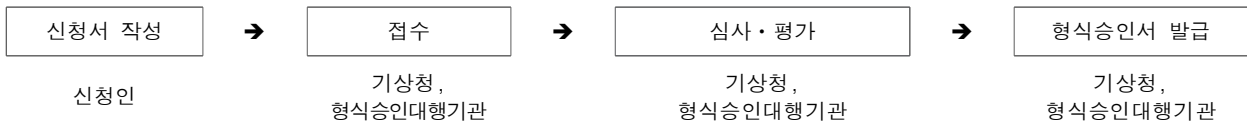
첨부서류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諸元) 및 성능에 관한 서류(설계도 또는 회로도 포함합니다)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구분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승인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지시·기록부:	
	모델(규격)		
	특이사항		
※ 붙임: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제6조의3제7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Certificate No.

TYPE APPROVAL CERTIFICATE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

for Meteorological Instrument

Company	Name of Company	Company Registration Number
	Name of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Description	Product Name	
	Manufacturer	
	Manufactured Date	
	Manufacture No.	· Sensor Part : · Indicator or Recording Part :
	Model (specification)	
	Remarks	
	※ Attachment: Test report(s)	

This is to certify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been tes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2, Paragraph 1(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6-3 Paragraph 4(Paragraph 7)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ssued on mm/dd/yyyy

**Administrator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변경승인 신청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 지시·기록부 :	측정범위 · 최소 : · 최대 :	
	모델(규격)		
	변경승인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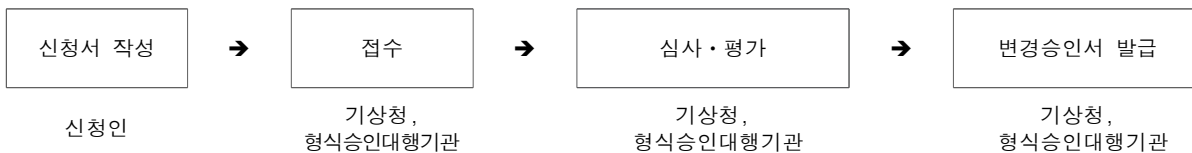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형식승인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형식승인 관리대장

구분 (형식승인/변경승인)	승인 연월일	형식승인 (변경승인) 번호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수입사 (수입하는 경우)	모델 (규격)	비고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변경승인서

형식승인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 센서부 : · 지시·기록부 :	측정범위 · 최소 : · 최대 :
	모델(규격)	
	재발급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서 변경승인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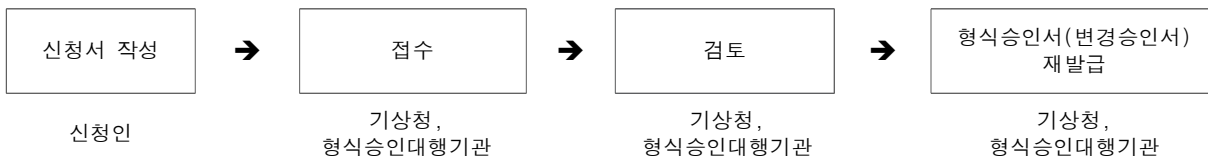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4. 부동산등기부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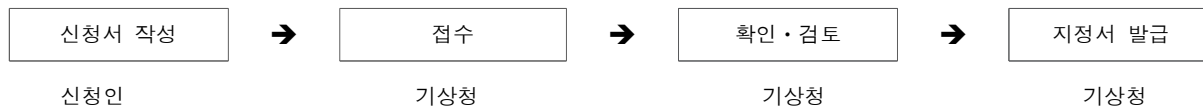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형식승인대행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형식승인 분야		
	업무개시일		
변경지정 신청내용	변경 사항		
	변경지정 신청 사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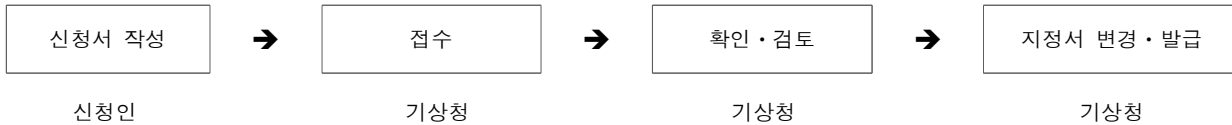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변경지정서

1. 법인(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실 주소:
5. 형식승인 분야:
6. 업무개시일:
7. 특이사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 변경지정 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신청 내용	실내 검정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모델(규격)	제조 연월일	형식승인서 번호	제조 번호	납품기관 (장소)
		현장 검정						
(기상측기 설치주소)								
(설치장소의 특성) 차량접근 가능(○ / X), 해양(), 절벽(), 송전탑(), 특이사항()								

검정증명서 신청	<input type="checkbox"/> 한글(「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영문(「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
-------------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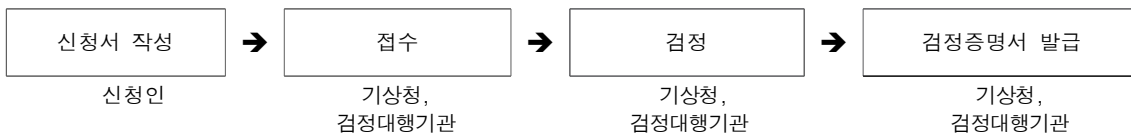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검정대행기관의 장 귀하

비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소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2.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상측기 설치주소란에 기상측기가 설치된 주소를 상세히 적어야 하며, 원활한 검정과 검정요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제 호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신 청 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검 정 내 용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모델 (규격)	제조 연월일	형식승인서 번호	제조번호	비고 (설치장소)
※ 붙임 : 기상측기 검정성적서							
<p>위 기상측기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 상 청 장 직인</p>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년입니다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COMPLIANCE for Meteorological Instrument							
Comp any	Name of Company				Company Registration Number		
	Name of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Conte nts	Description						
	Instrument Name	Manufacturer	Model (Specification)	Manufactured Date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Manufacture No.	Remarks (Site)
※ Attachment: Test report(s)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meteorological instrument above has been tes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e Weather Observation Standardization Act, and Article 7,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p> <p style="text-align: center;">Issued on mm/dd/yyyy</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Administrator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color: orange; font-weight: bold;">Seal</div> </p>							
※ This certificate is valid for ___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검정분야		
	업무개시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유 또는 공동활용·임차한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교정관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부동산등기부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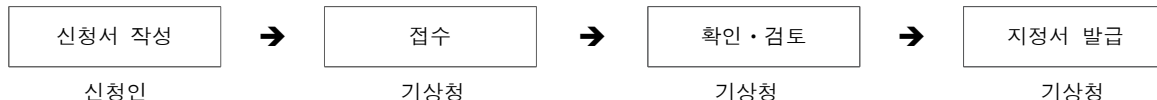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법인(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무실 주소:
5. 검정분야:
6. 업무개시일:
7. 특이사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 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